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‘○’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예천군청		심의일자	2026. 8. 27. ~ 2026. 8. 28.	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○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김○규 ※ 여러 명인 경우 ○○○외 ○명으로 적습니다.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경북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 653-5				
	지번	관련지번			
	대지면적 439.0㎡	용도지역 : 지구단위계획구역, 공동주택용지, 제3종일반주거지역	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72.78㎡	건폐율 16.58%	층수 지상 1층		
	주용도 단독주택, 축사, 창고(무허가)	구조 토담조/슬레이트	건축물 동수 2동		
	최고높이	용적률 16.58%	연면적 합계 72.78㎡		
구 분	주요 심의 내용				
심의내용 (보완사항)	(전○○) 원안 의결 (이○○) 원안 의결 (이○○) 원안 의결 (변○○) 원안 의결 (여○○) 원안의결				
심의결과	[○] 원안 의결 [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	
근거조문					
건축위원회 심의기준	9.3 심의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,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장이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. 가. 원안의결 :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나. 조건부 의결 :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다. 재검토 의결 :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라. 부결 :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. 단,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. 9.6 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는 [별지 제2호]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, 동 서식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건축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				
작성방법					
1. 심의 결과는 “원안의결”, “조건부 의결”, “재검토 의결” 또는 “부결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 2. “주요 심의 의견” 란은 개인 식별(이름, 소속 등)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기재(필요 시 심의위원은 표기를 甲, 乙, 丙으로 하는 등 임의로 기재 가능)					